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5-1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5. 4. 21
발의자	정희석의원외 6인

개정사유

-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부적합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수승대관리사무소를 삭제함
 -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거창군사무분장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에서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, 문화관광과에서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의회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함(안 제3조제2항제3호가목)

개정근거

- 「거창군사무분장규정」 제3조 별표1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「지방자치법」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가목중 “수송대관리사무소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(생략)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산업건설위원회 가. 농정과, 경제과, 환경녹지과, 건설과, 지역개발과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<u>수송대관리사무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가. ----- ----- -----(삭제)----- -----</p>